

[확정일자]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전문투자자용)

본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년 월 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다.

- (1)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이하 “질권자”)
- (2) 주식회사(이하 “질권설정자”)
- (3) **증권 주식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채무자” 또는 “수탁자”)

전 문

2016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인 질권설정자와 수탁자인 **증권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함)는 [중국건설은행] 위안화 정기예금(이하 “본건 예금”)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계약{계좌번호: 위탁자 성명;} 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채무자는 [중국건설은행 지점]의 본건 예금에 가입하였다. 년 월 일 채무자는 본건 예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질권자와 사이에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으며, 이하 “본건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질권설정자는, 본건 기본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에 대하여 질권자를 위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본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본건 기본계약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신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신탁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담보물**”이라 함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질권설정자가 보유한 모든 수익권(이하 “**본건 수익권**”이라 함. 그 상세는 별첨1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본건 수익권의 수익자에게 지급될 현금 기타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을 말한다.

“**본건 기본계약**”이라 함은 채무자가 본건 예금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이자율 및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질권자와 사이에 년 월 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및 년 월 일 체결한 관련 거래확인서(Deal NO)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 2 조 질권의 설정

① 질권설정자는 본건 기본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담보물 위에 1순위 근질권(이하 “**본건 질권**”)을 설정한다.

1. 1순위 질권자 : 주식회사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2. 피담보채권 :

(i) 본건 기본계약에 따라 2016년 월 일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CNH(USD) 를 지급함과 동시에 채무자로부터 KRW 를 지급받을 채권 및

(ii) 본건 기본계약에 따라 2016년 월 일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KRW 을 지급함과 동시에 채무자로부터 CNH(USD) 을 지급받을 채권

② 질권설정자는 본 계약 체결 직후(늦어도 당일 이내) 별첨 2의 본건 수익권증서에 본 조 제1항에 따른 질권 설정내용을 기재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대항요건 등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즉시 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질권설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 4 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 ①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신탁계약에 따라 본건 신탁이 해지, 종료, 무효, 취소되거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 및 기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 물상대위권, 기타 수익자로서 갖는 각종 신탁법상의 권리 및 이익 등에 대하여 미친다.
- ② 질권자는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질권의 취득 및 행사, 실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질권설정자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질권의 실행 등

- ① 질권자는 채무자가 본건 기본계약에 따라 질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건 기본계약, 신탁계약 상의 관련조항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담보권자로서 담보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 및 권한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질권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질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담보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질권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2.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신탁계약서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원 또는 물건을 그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에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 직접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등이 있는 경우 질권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내용을 질권설정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6 조 질권설정자의 의무

- ①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완전하게 변제되거나 이행될 때까지 다음 사항들을 계속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질권자의 본 계약에 따른 질권의 취득, 행사 및 집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항요건의 구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
 2. 담보물 또는 그의 전제가 되는 신탁계약 기타 이에 부수하거나 수반하는 계약 등을, 무효화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질권자의 권리를 설정, 보존 또는 유지하고 이를 완전하게 하거나 본 계약서에 따른 충분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 계약서에 따른 또는 담보물 각각에 대한 구제수단 또는 권리를 질권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권자가 요구하는 기타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할 것
- ②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1) 담보물을 양도, 매도 또는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2) 담보물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질권 이외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기타 달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 비용부담

질권설정자는 본 계약에 의한 질권 설정, 담보물의 유지, 보존, 실행 및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질권자의 권리의 설정, 보존이나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기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비용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질권자가 대신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질권설정자가 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 8 조 다른 약정과의 관계

질권자가 본건 기본계약 및 기타 다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권설정자로부터 추가담보를 취득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질권자의 권리는 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9 조 계약지위 변경 및 채권, 채무의 양도

- ①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 10 조 일부 무효 등

본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질권자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질권설정자

**

대표자 (인)

채무자 겸 수탁자

**증권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별첨 1

수익권의 표시

1. 수익권

- 권면금액: 금 정
(₩)
- 수탁자: **증권신탁
- 위탁자:
- 수익자:
- 신탁체결일: 2016년 0월 일
- 신탁기간:

별첨 2. 수익권 증서 양식